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는 정당하게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법은 최저 임금, 초과근무 수당, 기록 보관, 가족·의료 휴가법, 청년 고용에 대한 기준을 정합니다.



미국 노동부의 임금·노동시간국은 근로자가 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무급 가족·의료 휴가를 받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866) 487-9243

근로자는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는 직장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필요한 모든 안전장치와 함께 근로자가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는 직장에서 일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에 해롭지 않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800) 321-OSHA (6742)



전국노동관계위원회는 직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포함하여 직장 개선을 위해 함께 모이는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866) 667-NLRB (6572)

근로자는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인종, 피부색, 연령, 유전 정보, 성별,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종교, 출신 국가, 장애 또는 보호 대상 재향군인 신분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고용기회평등위원회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임신, 성 정체성, 성적 취향을 포함), 출신국가, 연령(40세 이상), 장애, 유전자 정보에 근거한 지원자 또는 직원에 대한 차별을 불법화하는 연방법을 시행합니다. (800) 669-4000



미국 노동부의 연방계약준수국은 연방정부와 사업을 하는 고용주가 차별금지가 요구되는 법과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800) 397-6251

근로자는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옹호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법은 근로자가 동료와 함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결성하여 임금과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는 직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포함하여 직장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집단 행위를 위해 함께 모이는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866) 667-NLRB (6572)

재향군인 또는 군인으로서 누구나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현재 또는 이전 군복무 신분에 따라 차별할 수 없으며 고용 선호도를 확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의 재향군인 취업 및 교육 서비스는 재향 군인, 전역 군인, 군인 배우자의 고용 권리를 보호합니다.

(866) 4-USA-DOL (487-2365)



미국 노동부의 연방계약준수국은 해당 연방 계약자 또는 하청업체의 직원(또는 지원자)인 특정 범주의 재향군인이 권리를 보호받도록 보장합니다.

(800) 397-6251

위에서 설명한 권리를 행사할 때 보복을 당할 경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 노동자는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이민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이민 신분으로 인해 보복당할 경우 보호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Worker.gov

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